

논의 벼 대체 사료작물재배

□ 세부 시행요령

가. 주관기관 : 시·도지사(축산부서)

나. 대체작물 : 사료용 청예옥수수, 수단그라스

다. 재배계획면적(잠정) : 2,000ha 이내

라. 재배대상지역

- 배수가 양호한 평야지등의 논으로 사료작물재배가 가능한 지역
- 경지정리가 정리된 논으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
- 재배농지와 사료작물을 이용하는 축산농가가 인접한 지역

마. 사업대상자

- 소사육농가로서 자기소유 또는 임차하여 논을 확보할 수 있는 자
- 논을 소유한 벼 재배농가로서 축산농가 또는 조합과 생산된 사료작물의 판매계약이 이루어진 농가

바. 소득보전 수준

- 논에 벼 대체작물로 사료작물(청예옥수수, 수단그라스)를 재배할 경우 쌀 평균소득에서 사료작물 소득의 차액을 보전(소득보전액 잠정추정액 : 10ha당 360천원 내외 수준)

사. 소득보전 조건

- 재배대상지역의 1개 단지가 최소한 2ha이상 이어져 있는 논(필지가 이어져 단지화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을 말함)을 확보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한 경우
- 사료작물은 청예사료의 생산량이 최소한 평년작의 70%수준(ha당 : 옥수수 4.2톤, 수단그라스 3.0톤)이상 생산한 경우

아. 농자재(종자·비료)공급 및 조사료의 판매알선

- 자재대(종자·비료)는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에 의하여 구매 공급하되, 자재대는 50% (자담50%) 지원
- 농자재는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에 의하여 구매 공급
- 사료재배용 농기계(파종수확등의 장비)는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별도 융자지원(융자비율은 소요액 80%)

자. 재배계획 면적 확정 및 평가실시

- 논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의향조사 후 농촌진흥청(축산연, 작시 등) 시·도, 농협중앙회, 농경연, 관련협회 및 농가대표등과 협의 후 최종 사업계획 확정시달